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주요 추진방향

◈ 「구직자취업촉진법」 제5조: 제도 기본목표, 개선방안 등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·시행 규정 → **'22.6.22. 제1차 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 의결**

1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배경 및 경과

□ **'09년**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**취업성공패키지** 사업을 시행하였으나, **법적 근거가 취약**하여 안정적·일관된 지원이 어렵고 **구직기간 중 소득지원도 미흡**했던 한계

□ 이에, **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**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**취업지원 서비스**와 **생계지원을 함께 제공**하는 **한국형 실업부조** 도입·시행('21.1.1.~)

* 실업부조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경사노위 노·사·정 합의('18.8, '19.3)→「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」 발표('19.6월, 일자리위)→'20.6월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

2 성과·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

① 시행 첫 해 43만명의 취업취약계층 지원

□ **제도시행 첫 해 43.2만명***(Ⅰ유형 34.9만명)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**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(Ⅰ·Ⅱ유형)와 생활안정(Ⅰ유형) 지원**

* 과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의 약 2배 수준 (취성패 최근 실적: ('18) 30.8만 → ('19) 22.3만 → ('20) 22.7만명)

○ 다만,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를 **158만명**으로 추정하였으나(노동硏), 이들의 **적극적인 신청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는** 한계

* 법령상 **경직적인 참여요건**, 코로나19로 시행된 다양한 중앙·지방정부의 **긴급지원대책과의 일부 유사성**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

⇒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, **보호범위**를 **확대**하고 **국민들의 적극적 참여** 여건 조성

1. 지원대상 확대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

□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등에 대한 폭넓은 취업지원을 위해 **선발형 청년특례 재산요건 확대**(4억→5억원 이하, '22.下 고시 개정)

* 장기적으로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 추세 등을 고려하여 **요건심사형 등 재산요건(현행 가구기준 4억원 이하) 확대 검토**(시행령 개정)

□ **15~17세 청소년 구직자 지원**을 위해 **청년특례 연령요건**(현 18~34세) **확대(법 개정)**

2. 참여자 선제적 모집 · 발굴

□ **복지멤버십***(복지부)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, **소득·재산요건별 잠재적 대상자 집중 홍보·발굴**

* **복지멤버십 가입**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**소득·재산·인적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가능성 판정**

□ **'국민비서'**(행안부) **챗봇 서비스를 활용**('22~)하여 제도안내, 기초상담 및 신청까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**AI 등을 활용**해 서비스 제공

3. 직접일자리-실업부조 연계 강화

□ **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** 및 **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**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**연계 강화** 검토

* 직접일자리 재참여 희망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→ 국취 수급 대상자는 국취 의무 참여 및 취업알선 집중 지원하고, 재취업 안될 경우 직접일자리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

② 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, 보장수준 만족도는 계층별 차이

□ 국민취업지원 **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음***('21, 노동硏)

* Ⅰ유형 **요건심사형 참여자의 <u>65.5%가 '만족한다'</u>**고 응답 ('불만족' 응답은 3.4%)

○ 특히, 참여비중이 높은 **청년층(62%)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***으로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**구직활동도 활성화** 경향**

* 매우 만족 24.2%, 만족 44.9%, **'**구직활동+직업훈련**' 응답 비중: 52.2% → 64.8%

□ **구직촉진수당의 주요 사용처**는 **생활비**(76.4%), **구직활동비용**(50.3%), 구직 관련 직접 비용(42.8%) 순으로, 실업부조 **본연의 목적에 부합**

○ 청년 등 **연령이 낮을수록 수당 수준에 만족**한 반면, **부양가족 있는 가구주** 비중이 높은 **중장년 남성 집단**에서 **만족도가 낮은 경향**

* <구촉수당 급여 만족도(참여자 전체)> "만족" 40.4%, "불만족" 22.1% ('21, 노동硏)
<유형별 만족도(5점 만점)> 청년 男3.36/女3.50, **중년 男2.90**/女3.20

⇒ **시행 첫 해 다소 엄격하게 설정된 지원수준 및 요건**에 대하여, 현장 의견 및 타 제도와의 정합성, 외국례를 참고하여 개선 추진

1. 안정적 구직활동을 위한 소득보장 여건 개선

□ 실업부조 제도로서 **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**을 할 수 있도록 **가구원 특성**(부양가족수 등)**에 따른 수당 차등화** 등 추진

□ 참여자의 **생계유지, 일경험** 등을 위한 **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제한**하는 규정을 **현장에 맞게 개선** 추진(법 개정, '22.下)

* **(현행)** 구촉수당 수급기간 중 발생한 **소득이 월 50만원 초과**시 **수당 지급정지**
(개선) 수당 지급정지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, **발생한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** 등

2. 수당 지급기간 차등화

□ 장기적으로 **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**(현재 6개월)의 효과를 분석, **소득 여건 등을 고려한 지급기간 차등화 등** 검토

3 상호의무 원칙에 기반하여 취업지원

□ 참여자의 **구직의욕을 판별**해 **지원**할 수 있도록 **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 방지** 등 **업무 처리절차를 지속 보완**하였으나,

* 단순 이력서 제출 등 특정 구직활동 반복 시 점검('21.4), 부정수급 조사·처리기준 마련('21.6) 등

○ 수급자가 **적극적으로 구직활동**하도록 절차를 보완하고, 상담사 **적극개입 확대** 필요

⇒ **상담사의 적극적 개입**을 통해 **취약계층**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**참여**를 높이고, **취업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및 내실화** 추진

1.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

□ 조기취업 유인 강화를 위한 **조기취업성공수당*** 도입('22) 및 **단계적 확대** 추진

*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급 전에 취업한 경우 **1회**에 한해 **50만원** 추가 지원

□ 진입단계 **구직의욕 확인 과제 부여** → 참여단계 **대면상담**(1·4회차) 등을 통해 **취업지원 단계별 구직의사** 지속 확인* 및 **상담사의 개입 확대**

*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구직의사 및 역량 확인 → 중간점검(대면상담): 구직준비도 점검을 통해 추가 취업지원 필요사항 점검 → 집중취업알선기간(3개월): 취업알선 전략 점검

2. 상담사의 적극적 취업지원 강화

□ 구직의지·역량 등 **구직자의 특성**을 구체적으로 **파악**해 **차별화된 취업지원**을 할 수 있도록 '**취업역량평가**' 지표 등 **전면 개편**('22.~)

□ 상담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종전 취업알선 방식에서 벗어나, **전담팀 방식의 전달체계 개편**을 통해 **체계적·전문적 취업지원** 제공

* '22.上 시범운영(**취업알선 전담팀** 2개소, **일자리정보 연계·조정팀** 3개소, **중장년취업지원전담팀** 2개소) → '23.~ 확대 운영

3.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실화

□ **맞춤형 기업채용지원서비스**를 **강화**하고, 일자리 성격, 채용여건 등 **구인기업별 정보**와 국민취업지원제도 **참여자 희망구인처 연계** 강화

□ 기업에서의 실제 **일경험** + 입사 전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모의지원 등 **구직활동 전반**에 걸친 **체험**을 지원하고, 체계적 지원을 위한 **근거 마련**(법 개정)

* 상시적 품질관리, 교육·컨설팅, 성과분석을 수행하는 **일경험 총괄지원센터** 운영('22~)

4. 취약계층과 청년 특화 지원

□ **밀착·종합적 지원이 필요한** 가칭**지원강화형** 수급자(한부모가정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 등)에 대해 **사례관리**(고용+복지문제 해결) 기능 강화

* **사례관리풀**을 구성하고, **1:1 사례관리 전담반**을 통해 집중 지원

□ 재학생 중심의 고용서비스 지원사업(가칭'청년도약보장패키지', '23년 신설)과 연계하여 **재학 시기부터 졸업 이후까지 훈련·일경험 등 연속 지원**

□ **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을 확대**(매출액 기준 상향, '22.下) 하고, 임금근로자 취업을 원하는 경우 **폐업지원 강화**(중기부 연계 등)

4 구직자 밀착지원 및 연계·협업체계 구축

□ 현재는 **상담사가 참여자를 1:1로 밀착 지원**하는 체계로, 유대관계 형성에는 이점이 있으나 자원 연계 등이 다소 취약하여 업무가 **칸막이 형태**로 수행

○ 상담사가 **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집중**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**전문성 강화 및 업무의욕 고취**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
□ **민간위탁기관**은 주로 청년층에 대하여 지원 중으로(전체 **지원 규모의 절반** 가량 차지), 기관 간 **역량 편차** 개선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

⇒ **상담사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**하고, **전달체계**(고용센터, 위탁·유관기관)의 **전문성을 강화**해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필요

1. (고용센터) 상담의 질(質) 제고

□ 취업지원 과정에서 상담사 **스스로 점검, 활용할 수 있는 필수업무·절차(서비스표준안)** 보급, 업무수행 체계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('22~)

□ 직업상담원 **인적구조**를 **단계적으로 개선**(압정형→피라미드형) 및 역량 있는 **직업상담원**은 **수석 직급**으로 선발*, 권한과 책임 부여('22~)

* '22.1월 기준 직업상담원 직급: ▲전임 1,644명(94.3%) ▲책임 83명(4.8%) ▲선임 16명(0.9%) ▲**수석 1명**

□ 1:1 사례관리, 심층상담 등 **서비스 질 제고**를 위한 **전문인력 확충** 추진 및 대국민 **서비스 접점 확대**(과밀센터 분할 지속 추진 등)

2. (민간위탁기관) 역량향상 지원 및 품질관리 강화

□ **성과평가** 연속 최하위 등급 기관은 사업 참여 배제하되, **우수기관**의 **안정적 참여**를 위한 **장기 위탁 운영근거 마련**(직업안정법 개정)

□ 민간위탁기관 **기본역량 심사 도입 및 컨설팅** 제공(권역별 슈퍼바이저 배치 등) 등 **관리 시스템** 구축을 통해 **서비스의 질 제고** 유도('22.下~)